

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



KIDI
한국섬진흥원
Korea Island Development Institute

한국섬진흥원-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협력 협약서

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과 한국섬진흥원(KIDI)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본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상호 협력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친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, 농어촌 및 섬 분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, 업무상의 비밀(기밀)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.

- 가. 양 기관의 연구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 상호 협조
- 나. 양 기관의 연구 관련 시설의 공동 활용
- 다.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및 연구 발전을 위한 전문지식의 공유
- 라. 양 기관이 보유한 협력 네트워크의 상호 공유
- 마. 그 밖에 양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업무활동 협력

제4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규정한 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조정)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제반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주요 정보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7조(고지의무) 본 협약 체결 이후 협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양 기관의 서면 합의로 변경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협의 중단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10조(보관) 본 협약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·기명 날인 후,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3월 17일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원장 김홍상

김홍상

한국섬진흥원

원장 오동호

오동호